

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임종국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국제개발협력기금의 수혜 및 교류대상을 현행 외국 지방정부에서
외국 지방정부와 그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,

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로 확대하여
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」는

공적개발원조, 개발컨설팅, 정책공유,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을

사업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

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는
기금의 용도를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으로 한정하고 있어
두 조례 사이에 부조리한 부분이 있으므로

국제개발협력기금의 수혜 및 교류대상을 확대하여
기금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

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